## 이혼

[서울가정법원 2010. 1. 29. 2009르1499]



## 【전문】

【원고, 항소인】

【피고, 피항소인】

【제1심판결】서울가정법원 2009. 4. 17. 선고 2007드단74907 판결

【변론종결】2009. 11. 20.

## 【주문】

1

- 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

## [이유]

- 】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"을 제1 내지 17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"를 "을 제1 내지 25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"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, 가사소송법 제12조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- 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판사 안영길(재판장) 김윤정 이명철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